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, 이럴 때 신고하세요!

1 사회보장급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

생계급여 · 의료급여 · 주거급여
장애인연금 · 기초연금 · 아동수당

2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됐다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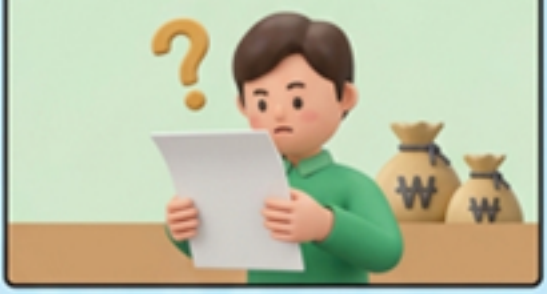

3 실제 생활과 다른 상태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

사실혼 배우자

위장이혼

4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근로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 수령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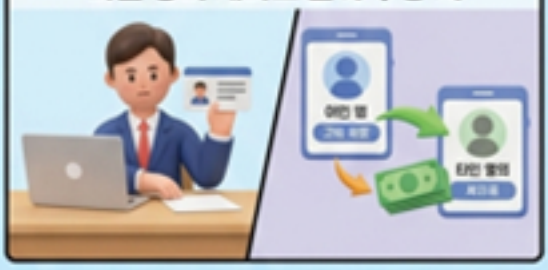

5 허위 계약서 제출 또는 타인 명의 차량 이용 등으로 재산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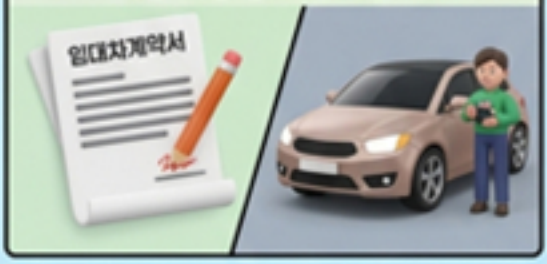

6 가족관계 해체로 보장받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와 왕래 시

7 어떻게 신고하나요?

- 인터넷 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
- 우편 또는 팩스도 가능

복지로 바로가기

8 신고자 보호 및 혜택!

익명 신고 가능

신고자 비밀보장 (공익신고자 보호법)

환수결정액 30% 이내 포상금 지급

신고상담 전화 보건복지부 1551-1290 / 문의 : 주소지 관할 구·군청 생활보장과